

외무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1. 개정이유

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개최 시기 관련 규정(현행 제25조)을 외무공무원임용령으로 일원화하고 외무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에서는 삭제

2. 주요내용

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개최 시기 관련 현행 제25조 삭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외교부령 제 호

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25조(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 개최시기)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매년 5월 및 11월에 개최하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</u>	<u><삭 제></u>